

2022. 2. 20.

3. 격리 생활 및 지원에 대해 궁금합니다.

1

격리 관련

Q1.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 하나요?

- 동거인의 격리여부는 예방접종완료*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
 - 가족이 재택치료를 받는 동거인이 **예방접종완료자**인 경우, 격리가 면제되면서 수동감시** 대상이며, **접종미완료자**인 경우 환자와 동일기간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.
- * (예방접종완료자)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~90일 이내 인자, 또는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 기확진된 경우
- ** (수동감시) 보건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지 않고, 본인이 스스로 증상을 모니터링하다가, 발열 등 증상 발생 시에 보건기관에 연락

Q2. 모든 가족이 격리되면, 생필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?

- 동거인은 격리기간 중 **대면진료, 의약품 구매수령,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**에 한하여 허용됩니다.
 -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하며, 생필품 등은 온라인 구매를 우선적으로 권고합니다.

Q3. 확진자 외 다른 가족이 있는데 화장실은 하나인 경우 재택치료 예외가 인정 되나요?

- 재택치료는 공동격리자와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.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**생활수칙을 지켜야** 합니다.
- ※ (생활수칙 주요내용) 생활공간 분리,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,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,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

- 다만,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경우 접촉을 피할 수 없어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, “사용시 마다 소독”이 필요합니다.

※ (화장실 사용 관련) 변기 사용 시에는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린 후 매 사용시 마다 소독

Q4. 공동격리자가 꼭 필요한 외출을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나요?

- 공동격리자가 진료,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외출을 할 때에는 옷을 갈아입고 손소독을 한 후 KF94 마스크(또는 동급)를 착용해야 합니다.
- 마스크 또한 매우 중요한 개인보호구이며, 개인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전·후로 반드시 손소독을 해야 합니다.
-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, 엘리베이터 탑승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

Q5. 청소년 등의 공동격리자가 학교에 가지 못 할 경우 출석 인정이 되나요? 온라인 등 대체학습 제공도 되나요?

- 재택치료 공동격리로 인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 출석이 인정됩니다.
-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, 교육 동영상 또는 온라인 과제물 제공 등 대체 학습도 제공되고 있습니다.

Q6.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- 재택치료 대상자는 대상별로 허용된 범위¹⁾ 이외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.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 대해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(자가격리자 앱

미사용),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.

1)(재택치료자): 대면진료

(동거인) 대면진료, 의약품 구매·수령,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상황

(기타) 재난, 응급의료,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, 치매, 착오 등 고의성 없음 등

** 1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(감염병예방법) + 형사고발,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

II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 지원

Q7. 재택치료자, 공동격리자(동거인)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?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일 지원액에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.

생활지원비 지원기준('22.2.14. 이후 입원·격리통지자부터 적용)

(단위 : 원)

가구내 격리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생활지원금 (14일분, 월 상한액)	488,800	826,000	1,066,000	1,304,900	1,541,600	1,773,700
(일 지원 환산액)	34,910	59,000	76,140	93,200	110,110	126,690

1)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,000원씩 추가 지급

2)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

Q8.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나요?

○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병·의원 방문, 코로나19 예방접종, 의약품 구매·수령, 식료품 구매,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이 허용됩니다. 단, 가능한 한 외출을 최소화

화하고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-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,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,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(대리 구매 요청 포함)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Q9.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재택치료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나요?

- 현재,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.

Q10. 변경된 확진자 및 동거인의 격리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?

- 2022.2.9.부터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 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이며, 동거인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, 접종미완료자는 환자와 동일하게 격리해야 합니다.

<재택치료자/동거인 격리기준>

구분	격리기간 및 관리방식	해제 전 검사(PCR)	격리해제 시점
재택치료자* (확진자)	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▶	없음	
동거인	(접종완료자) 격리면제, 수동감시 최초 확진자*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▶ <hr/> (접종미완료자) 공동격리 최초 확진자*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▶	해제 전 1회 (6~7일차)	7일차 24:00 (= 8일차 00:00)

▶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: 출근·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,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

※ 예방접종완료자

3차 접종자, 2차 접종 후 14일-90일인 자

*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, 3차 접종자로 간주

Q11. 격리해제일은 언제인가요? 몇 시 해제인가요?

- 재택치료자(환자)의 격리기간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며, 7일차 자정(24:00)에 자동 해제됩니다.

▶ (예시) 진단 시 무증상자

11.1.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.7. 24:00 격리해제 가능

▶ (예시) 진단 시 유증상자

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: 11.1. 12시 증상 발생 → 11.2. 검체채취 → 11.4.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→ 11.8. 24:00 격리해제 가능

Q12. 유증상자의 경우, 증상발생일에 따라 격리해제일이 달라지나요?

- 변경된 격리기준은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Q13. 동거인의 격리해제일은 언제인가요?

- 동거인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대상이며, 접종미완료자인 동거인의 격리기간은 재택치료 환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입니다. 즉, 2월 1일 재택치료환자가 검체채취를 하였다면 환자와 동일한 2월 7일 자정 (24:00=8일 0시)에 격리해제 됩니다.

Q14. 재택치료자는 격리해제를 위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?

- 확진자의 격리해제는 임상경과기반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2.9일 이후 격리기간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째 자정(24:00)에 해제되며, 별도의 검사나 통보 없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. 이는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하여 7일 이후에는 전파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.
 - 코로나19 초기에는 PCR 검사기반으로 격리해제를 하였으며, 최근까지도 검사기반 격리해제를 준용하기도 하였으나, 2.9일 이후에는 거의 모든 환자는 임상경과기반의 격리해제를 통해 해제되고 있습니다.
 - 이는, PCR 검사 방법은 매우 민감도가 높아 바이러스의 사멸 이후에도 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고, 세포 내에 남아있는 소수의 죽은 바이러스 조각만으로도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
- 다만,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해제 시 반드시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, 이는 동거기간 동안 확진환자로부터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.

Q15.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된 경우, 함께 격리중인 나머지 동거인의 격리기간이 연장되나요?

- 재택환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미완료자는 첫 번째 환자(A)와 격리기간이 7일로 동일합니다.
- 격리 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(B)된 경우에도, 해당 확진자(B)만 별도의 공간에 추가 격리하게 되며, 첫 번째 확진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.

Q16.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의 진료를 위한 외출이 가능한가요? 이 때 재택치료자가 직접 운전해서 외출할 수 있나요?

- 우선, 재택치료자가 본인의 진료를 위해서 **외래진료센터**를 이용하는 경우 직접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- 외래진료센터 방문시 1) 방문하고자 하는 **외래진료센터**에 **사전 예약 및 통보**, 2) 확진자 아닌 사람은 **동승 금지**(소아 등 불가피한 경우 가능), 3) **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** 및 **운전자 장갑** 착용, 하차 후 차내·외 **표면소독**, 4) **동선을 최소화**하여 외래진료센터(주차장 포함) 외 **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** 등 유의사항을 지키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자녀의 진료, PCR 검사 등에 한하여 본인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으러 가실 수 있으나, 마스크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, 상시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귀가하시기 바랍니다.

Q17. 공동격리중인 비확진 동거인의 경우 언제 외출이 허용되나요??

- 비대면·온라인 방식 이용이 불가한 **상황***에 한하여, 예외적으로 1일 2시간 이내의 외출이 가능합니다. 외출시에는 KF94(또는 동급)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.
- 외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병·의원 대면진료, 의약품 구매·수령,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이며,
- 외출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하며,
 -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하지 않도록 하며,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검사를 해볼 것을 권고합니다.
 - 자가검사 결과 양성시에는 외출을 취소하고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- 이동시에는 도보,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활용합니다.

Q18. 재택치료 대상인 환자가 혼자 사는 경우 생필품 등 구입을 위해 외출이 가능한가요?

-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병·의원 방문, 코로나19 예방접종, 의약품 구매·수령, 식료품 구매,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이 허용됩니다. 단, 가능한 한 외출을 최소화하고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,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, 행정안내센터*에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(대리 구매 요청 포함)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

* 보건소에서 문자로 통보, 또는 지자체별 게시판에 홍보

Q19. 재택치료자의 부모님 임종 상황입니다. 외출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?

-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의 외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.